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314 호 2021. 10. 28.(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34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35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37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38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4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39호[하천점용 허가 고시]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1호[강동골프장 조성 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 고시]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2호[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문] ..... 8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8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289호[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01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 4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10호[공인 등록 공고] ..... 5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16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5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1317호[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 75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34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식회사 경동도시가스 대표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번지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6-35번지 일원 ○ 울산광역시 복구 양정동 776-35번지 일원	하천의 명칭	○ 양정천 ○ 양정천
점용 내용	○ 도시가스 배관매설	점용 면적	○ 일시: 208.8㎡ ○ 영구: 12.31㎡
점용 기간	○ 일시: 2021. 10. 27. ~ 2021. 11. 25. ○ 영구: 2021. 11. 26.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35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천 점용협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공원녹지과)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연암동)		
점용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48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29-2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31-2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31-3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04-1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11-2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12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713-2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1006번지</li> <li>○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동 1011번지</li> </ul>	하천의 명칭	○ 동천
점용 내용	○ 토지의점용(대규모 꽃단지 조성)	점용 면적	○ 28,895㎡
점용 기간	○ 일시: 2021. 10. 21. ~ 2022. 5. 31.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37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이레토건		
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홍상골2길 40-16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의 명칭	○ 매곡천
점용 내용	○ 공작물(이동식 콘테이너)의 설치	점용 면적	○ 일시 : 6.0m <sup>2</sup>
점용 기간	○ 일시: 2021. 10. 22. ~ 2021. 11. 12.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38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이춘자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만석골길 49(달천동)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동 706-1번지	하천의 명칭	○ 상안천
점용 내용	○ 토지의 점용	점용 면적	○ 일시 : 2.0m <sup>2</sup>
점용 기간	○ 일시: 2021. 10. 22. ~ 2022. 9. 3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1-239호

## 하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하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오치골3길 16		
점용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동 936-1번지	하천의 명칭	○ 호계천
점용 내용	○ 상수관로 매설공사	점용 면적	○ 일시: 135.1㎡ ○ 영구: 28.1㎡
점용 기간	○ 일시: 2021. 10. 25. ~ 2021. 11. 23. ○ 영구: 2021. 11. 24. ~ 2025. 12. 3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1호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실시계획(3차 변경)인가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 가. 면 적 : 735,926.8㎡(당초) / **719,973.8㎡(변경)**
  - 나. 규 모  
(당초) 골프장(18홀, 735,926.8㎡), (**변경**) 골프장(18홀, **719,973.8㎡**)
  - 다.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정면적(㎡)	변경면적(㎡)	비 고
체육시설용지	194,834	<b>194,834</b>	
건축시설용지	4,830	<b>4,930</b>	
기반시설용지	47,927	<b>46,256</b>	
녹 지 용 지	488,335.8	<b>473,953.8</b>	
계	735,926.8	<b>719,973.8</b>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코리아신타 주식회사 대표자 백인균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5. 사업기간 : 2019. 7. 4. ~ 2021.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7.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5	체육시설	골프장	북구 어물동 산43일대	735,926.8	감)15,953	719,973.8	'09.2.19 울고45호	면적 감소

나. 체육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5	체육시설	· 면적감소 : 감 15,953m <sup>2</sup> - 735,926.8 → 719,973.8m <sup>2</sup>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결과 수용 기각된 토지 및 문중소유묘지 제척 을 위한 구역경계 조정 등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242호

#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고시일(효력발생일) : 2021년 10월 28일
2. 고시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명 부여 9건 (“붙임” 참조)
4. 도로명 부여 절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 052-241-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 부여 조서 및 현황도(현장사진) 1부. 끝.

**붙임 1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고시 조서 및 현황도(현장사진)**

## 울동공공주택지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로급)

(단위:M)

순번	도로명	위계	길이	폭	시점	종점	기초 간격	기초번호		비고
								시작	끝	
1	울동로	로	740	20	양정동 130-5	효문동 934-4	20	1	74	

## 울동공공주택지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길급)

(단위:M)

순번	도로명	위계	길이	폭	시점	종점	기초 간격	기초번호		비고
								시작	끝	
1	효정1길	길	500	8	양정동 44-5	양정동 129-1	20	1	50	
2	효정2길	길	66	8	양정동 124-6	양정동 44-8	20	1	8	
3	효정3길	길	96	8	양정동 127-4	양정동 128	20	1	10	
4	효정4길	길	350	8	양정동 226	양정동 231	20	1	36	
5	효정5길	길	80	8	양정동 168-3	양정동 139-2	20	1	8	
6	효정6길	길	220	8	양정동 132-1	양정동 45-1	20	1	22	
7	효정7길	길	250	8	양정동 44-4	효문동 33-7	20	1	26	
8	효정8길	길	350	8	효문동 33-4	효문동 23-5	20	1	36	

# 율동공공주택지구 로급



구분	심의결과 도로명
①	율동로

# 을동공공주택지구 로급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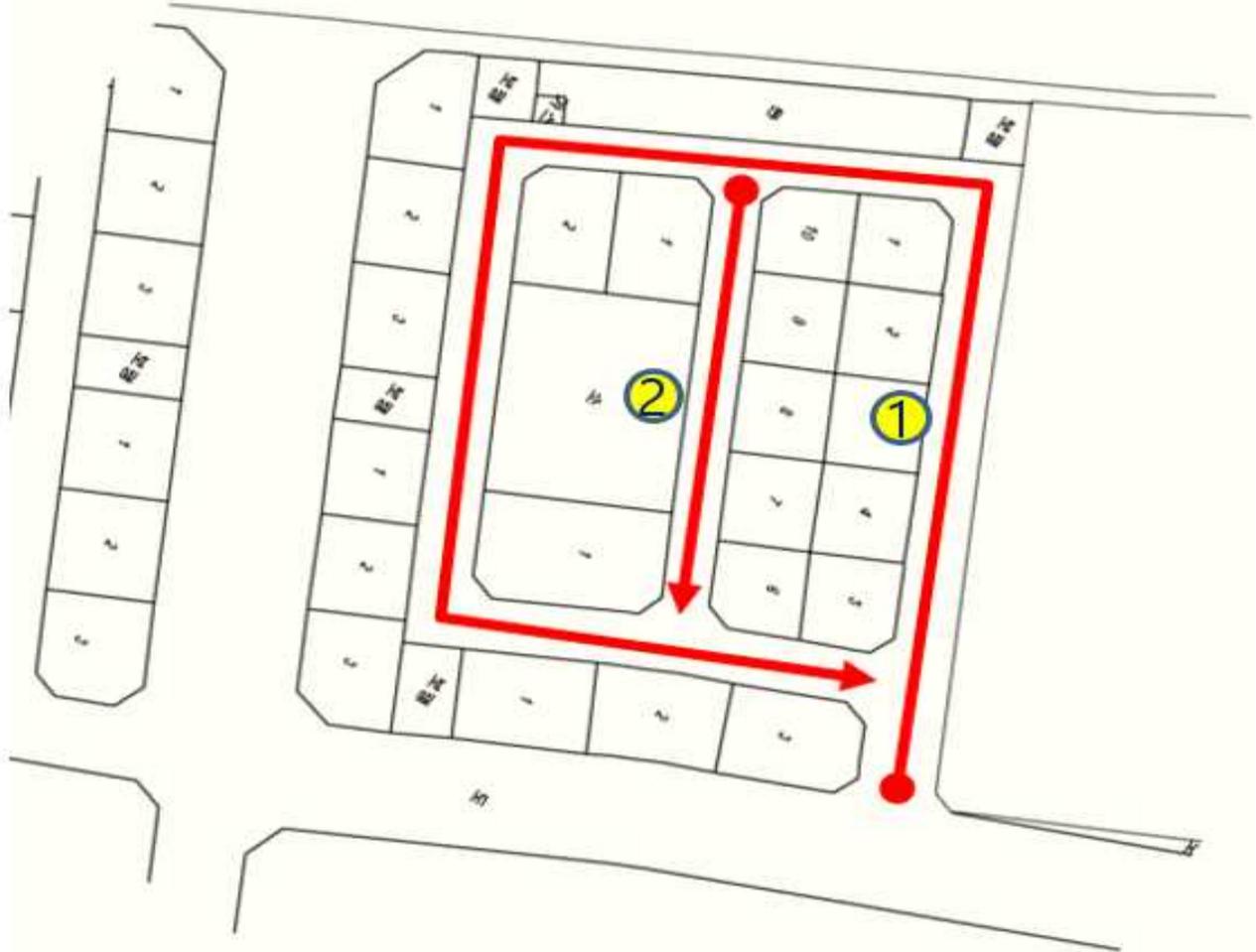


# 을동공공주택지구 길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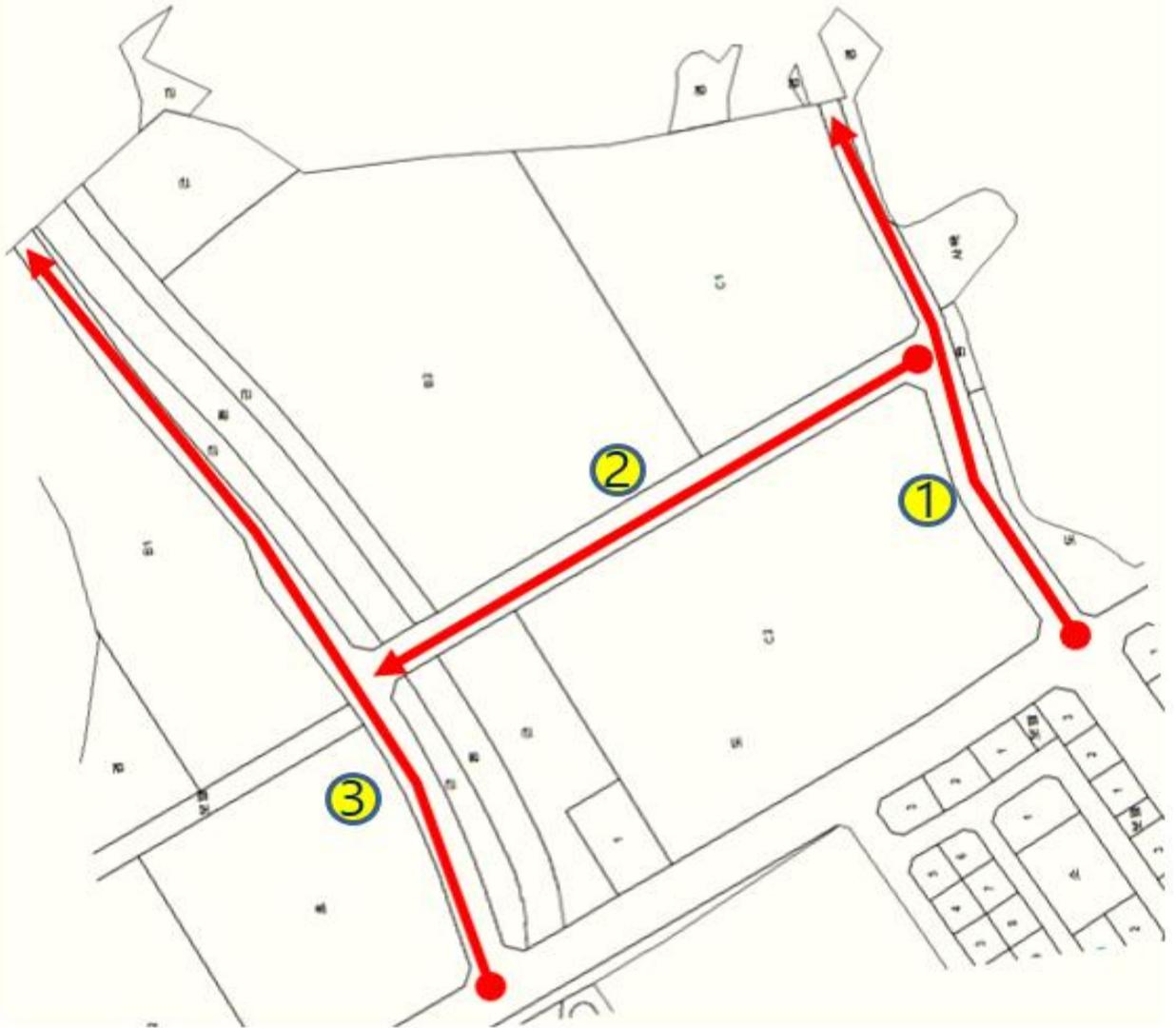
구분	심의결과 도로명
①	효정1길
②	효정2길
③	효정3길

# 을동공공주택지구 길급(2)



구분	심의결과 도로명
①	효정4길
②	효정5길

# 을동공공주택지구 길급(3)



구분	심의결과 도로명
①	효정6길
②	효정7길
③	효정8길

# 을동공공주택지구 길급(1) 현장 사진



# 을동공공주택지구 길급(2) 현장 사진



# 을동공공주택지구 길급(3) 현장 사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288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비율 준수를 위한 차량기준 정수 등을 정비하고 총괄부서 관리 방법 및 운전자 과실에 의한 책임 조항 등을 마련하여 공용차량 관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차량기준 정수 등을 관련법령 및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제10조)
- 나. 총괄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 지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안 제16조~제17조)
- 다. 부서별 업무용 차량공유 및 통합운영을 위한 배차승인 권한 정비(안 제18조)
- 라. 운전자 과실에 의한 책임 조항 명시(안 제27조의2~제27조의3)

####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7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회계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georgiana0215@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회계담당관
- 3) 팩 스 : 052-241-8689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회계담당관(052-241-731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복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을 “(차량총괄부서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집중관리부서”를 “총괄관리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중관리부서는 당해”를 “제2차 관리부서는 배정받은”으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를 “차량관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을 “특별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집중관리부서”를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차량 집중관리부서”를 “차량총괄부서”로 한다.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해당차량의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26조의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제2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

### 1. 승용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구본청	33대	1대 (구청장 전용)	4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대)	28대	승용차량 기준정수 제외
보건소	2대			2대	
구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	<p>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p> <p>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p>
사업용	<p>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p>

##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동 행정복지센터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별지 제12호서식]

<b>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b>					
신청자	성 명		성 별		직 급
	소 속				연락처
운전자 관련사항	본인			상대방	
	차량번호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운전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연락처				연락처
	보험회사명				보험회사명
사고 관련사항	사고일시 및 장소				
	사고내용 (사고발생 상황 및 원인)				
	사 고 피해내용	※ 물적사고 내용(인적사고 발생시, 피해 내용 및 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			
	조치사항				
	차량수리처 및 연락처				
	기타사항				
[첨부서류] 1. 사고차량 사진 1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11.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임차차량</u>”이란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제28조에 따라 <u>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u></p> <p>13. “<u>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u>”이란 <u>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u></p>
<p>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② (생략)</p> <p><u>&lt;신설&gt;</u></p>	<p>제10조(차량교체 승인)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u>대기환경보전법</u>」 제58조의5에 따른 <u>저공해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한다.</u></p>
<p>제16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u>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u></p> <p>②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u></p>	<p>제16조(차량총괄부서 지정) <u>&lt;삭제&gt;</u></p> <p>② <u>차량총괄부서의 장은 -----</u></p>

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및 기타 차량의 운행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③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생략)

제18조(배차신청·승인) ①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일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차신청

-----  
-----  
-----  
-----.

제17조(차량 관리방법) ① -----  
-----  
----- 총괄관리부서-----  
-----.

② 제2차 관리부서는 배정받은 차량관리 업무-----  
-----  
-----.

<삭 제>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배차신청·승인) ① -----  
-----  
-----  
-----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  
----- 특별한-----  
-----.

② -----

을 받은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차량배차 신청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차고운영)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 운전원 관리 등 차고안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신 설>

차량총괄부서 또는 단위부서-----  
-----  
-----  
-----.

제21조(차고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차량총괄부서-----  
-----  
-----  
-----.

제26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공용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 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해당 차량의 운전원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은 운전원이 부담한다.

제26조의3(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① 제26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전원에게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사고에 고의 또는 중과실

이 없을 것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p> <p>1. 승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차량정수 배정대상</th> <th rowspan="2">기준 정수</th> <th colspan="3">차 형 별</th> </tr> <tr> <th>대형 승용차</th> <th>중형 승용차</th> <th>경·소형 및 다목적차</th> </tr> </thead> <tbody> <tr> <td>구본청</td> <td>32대</td> <td>1대 (구청장·전 용)</td> <td>2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td> <td>29대</td> </tr> <tr> <td>보건소</td> <td>2대</td> <td></td> <td></td> <td>2대</td> </tr> <tr> <td>구의회</td> <td>2대</td> <td>1대 (의전용)</td> <td></td> <td>1대</td> </tr> </tbody> </table> <p>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별</th> <th>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통근용</td> <td>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td> </tr> <tr> <td>기타 사업용</td> <td>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td> </tr> </tbody> </table>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구본청	32대	1대 (구청장·전 용)	2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29대	보건소	2대			2대	구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	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p>[별표 2] 차량의 단위부서별 기준정수(제6조 관련)</p> <p>1. 승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차량정수 배정대상</th> <th rowspan="2">기준 정수</th> <th colspan="3">차 형 별</th> <th rowspan="2">제1종 저공해 자동차</th> </tr> <tr> <th>대형 승용차</th> <th>중형 승용차</th> <th>경·소형 및 다목적 차</th> </tr> </thead> <tbody> <tr> <td>구본청</td> <td>33대</td> <td>1대 (구청장· 전용)</td> <td>4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대)</td> <td>28대</td> <td rowspan="4">승용차 량 기준정 수 제외</td> </tr> <tr> <td>보건소</td> <td>2대</td> <td></td> <td></td> <td>2대</td> </tr> <tr> <td>구의회</td> <td>2대</td> <td>1대 (의전용)</td> <td></td> <td>1대</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p>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사업별</th> <th>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통근용</td> <td>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td> </tr> <tr> <td>사업용</td> <td>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td> </tr> </tbody> </table>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제1종 저공해 자동차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 차	구본청	33대	1대 (구청장· 전용)	4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대)	28대	승용차 량 기준정 수 제외	보건소	2대			2대	구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	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차																																																														
구본청	32대	1대 (구청장·전 용)	2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1대)	29대																																																														
보건소	2대			2대																																																														
구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	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기타 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차량정수 배정대상	기준 정수	차 형 별			제1종 저공해 자동차																																																													
		대형 승용차	중형 승용차	경·소형 및 다목적 차																																																														
구본청	33대	1대 (구청장· 전용)	4대 (부구청장 전용 1대, 업무용 3대)	28대	승용차 량 기준정 수 제외																																																													
보건소	2대			2대																																																														
구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통근용	가. 본청 : 통근인원·통근거리·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의회 : 각종 행사참석 이동용으로 적정대수를 배정																																																																	
사업용	각종 설비 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 등 특수업무분야에서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현 행	개 정 안																																				
<p>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 업 별</th> <th style="width: 85%;">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도로사업용</td> <td>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td> </tr> <tr> <td>산림 및 녹지사업용</td> <td>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지방세지도용</td> <td>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각종 단속용</td> <td>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동주민센터</td> <td>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기타 사업용</td> <td>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td> </tr> </tbody> </table> <p>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 업 별</th> <th style="width: 85%;">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기 타 용</td> <td>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td> </tr> </tbody> </table>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주민센터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p>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업별</th> <th style="width: 85%;">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도로사업용</td> <td>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td> </tr> <tr> <td>산림 및 녹지사업용</td> <td>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지방세지도용</td> <td>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각종 단속용</td> <td>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동행정복지센터</td> <td>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td> </tr> <tr> <td>기타 사업용</td> <td>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td> </tr> </tbody> </table> <p>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사업별</th> <th style="width: 85%;">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th> </tr> </thead> <tbody> <tr> <td>기타용</td> <td>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td> </tr> </tbody> </table>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주민센터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 타 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도로사업용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산림 및 녹지사업용	본청 등 : 임야면적 2,300ha 이상을 기준,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지방세지도용	본청 등 :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각종 단속용	각종 단속·지도 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동행정복지센터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을 적정대수 배정																																				
기타 사업용	사업용으로 현장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업별	배정대상 차형 및 대수																																				
기타용	사업의 성격, 업무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289호

##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참전유공자법」 등 5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가족·유족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사항을 추가 적용하고, 체육시설에 송정다목적구장 추가, 사용시간 조정가능 단서규정 신설 등으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훈대상자 감면 사항 정비(안 별표 4)

- (현행)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 (추가)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 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나. 다른 규정에 따른 사항 및 용어 정비 등

- 송정다목적구장 명칭, 소재지 등 운영내용 명시(안 별표 1, 별표 2)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시간 조정가능 단서규정 신설(안 별표 2)
- 「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규칙」 준용 규정 삭제(안 제10조, 제13조)
-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춰 용어 정비(“사회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안 제19조)

### 3. 개 정 안 : 붙임 참조

###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17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kimdy777@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문화체육과
- 3) 팩 스 : 052-241-7339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41-7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의 제목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체육지도자의 배치)”로 하고, 같은 조 “사회체육지도자”를 “체육지도자”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 [별표 2]

##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촌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별표 4]

**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 으로 사용하는 자	100분의 100
1.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80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 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4.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50
1. 다자녀 카드 소지자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1. 가임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10
1.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3.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경우 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u>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③·④ (생 략)</p>	<p>제10조(사용료 및 사용시간 산정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p> <p>1. ~ 6. (생 략)</p> <p>② 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u>울산광역시 복구 재무회계 규칙</u>」을 준용한다.</p>	<p>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lt;삭 제&gt;</p>
<p>제19조(<u>사회체육지도자</u>의 배치) 구 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u>사회체육지도자</u>를 배치할 수 있다.</p>	<p>제19조(<u>체육지도자</u>의 배치) ----- ----- ----- <u>체육지도자</u> -----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b>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b>				[별표 1] <b>체육시설의 설치(제3조 관련)</b>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	비고	시설명(명칭)	소재지	주요 시설	비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오토밸리 복지센터	산업로 1020 (연암동 1121-2)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예식장, 뷔페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호계로 416-31 (신천동 578-1)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체력측정실, 스쿼시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쇠부리체육센터	천곡남로 86 (천곡동 451-4)	수영장, 헬스장, 실내체육관, 탁구장, 스쿼시장, 공연장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호계문화체육센터	호수1로 18 (창평동 386-1)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농소운동장	호수중앙로 14 (창평동 39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화장실, 관리실 등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달천운동장	농서로 301 (달천동 75-1)	축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관리실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효문운동장	연암17길 20-1 (연암동 265-39)	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체력단련시설, 인공암벽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양정생활체육공원	오치골2길 25 (양정동 503-1)	주축구장, 인라인 스키이트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련실 등	
염포운동장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염포운동장	중리8길 18-16 (염포동 377-4)	축구장, 족구·배구장, 체력단련장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중산다목적구장	중산동 798-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상안풋살구장	상안동 35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명촌다목적구장	명촌동 862-2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효문다목적구장	연암동 267-3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동 1471-4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화봉다목적구장	송내1길 15 (화봉동 445-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송정다목적구장	송정동 1104-71	다목적구장(인조잔디 1식)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춘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별표 2]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9조 관련)

시설명(명칭)	사용시간	휴무일	비 고
오토밸리 복지센터	○ 평일: 06:00 ~ 22: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 07:00 ~ 19: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시설의 경우 제외
울산광역시 북구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농소운동장	○ 하절기(3월~10월) ⇒ 06:00 ~ 22:00 ○ 동절기(11월~2월) ⇒ 07:00 ~ 21:00	○ 1월1일·설날·추석 연휴기간, 근로자의 날 ○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구청장이 임시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천운동장			
효문운동장			
양정생활체육공원			
염포운동장			
중산다목적구장			
상안풋살구장			
명춘다목적구장			
효문다목적구장			
가람다목적구장			
화봉다목적구장			
송정다목적구장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별표 4] <b>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b>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100분의 100
1.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80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3.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4.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50
1. 다자녀 카드 소지자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1. 가입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10
1.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3.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경우 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별표 4] <b>사용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제12조 관련)</b>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울산광역시 북구를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자	100분의 100
1. 인조잔디축구장을 그라운드골프경기로 사용하는 노인(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100분의 80
1.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인정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2. 다음 각 목의 감면자 또는 그 감면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및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기·인체조직 등 기증자 4. 인조잔디축구장을 사용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	100분의 50
1. 다자녀 카드 소지자 2.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1. 가입여성(자유수영, 강습수영, 아쿠아로빅/ 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10
1. 그린카드 이용자(월 사용료에 한함)	100분의 5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사용료에만 적용한다. 3. 감면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았을 경우 사용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청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01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주민감사 청구인의 연령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위임 근거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 나. 감사청구 주민연령 기준 변경(안 제2조)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17.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mirne716@korea.kr](mailto:mirne716@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 3) 팩 스 : 052-241-72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052-241-71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 감사청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6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21조”로,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1조 ----- ----- ----- ----- ----- ----- ----- -----</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u>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u></p>	<p>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 ----- -----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p>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10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복구 공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등록 및 폐기 공인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등록 공인 내역

연번	공인명	등록사유	등록일자 (사용개시일)	인영	비고
1	울산광역시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관인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신규개각	2021. 11. 1.		
2	울산광역시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출납원인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신설에 따른 신규개각	2021. 11. 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1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주민자치회 전 동 실시에 따라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등 운영체제를 명확히 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여건반영
- 기존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한 운영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용어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기능(안 제3조, 제5조)
-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안 제6조 ~ 제8조)
- 라. 주민자치회의 장, 사무국장, 감사, 분과위원회 운영(안 제9조 ~ 제12조)
- 마. 주민총회, 자치계획의 구성, 회의, 의견청취 등(안 제13조 ~ 제16조)
- 바. 주민자치회 위원 의무, 대우, 해촉(안 제17조 ~ 제20조)
- 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능(안 제21조, 제22조)
- 아.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안 제23조, 제24조)
- 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및 강사, 사용료 및 수강료 운영(안 제25조 ~ 제28조)
- 차.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참여, 보고 등(안 제29조 ~ 제31조)

- 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계기관 등과 협조(안 제32조, 제33조)
- 타. 감독, 보험, 운영세칙(안 제34조 ~ 제36조)
- 파.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 제4조)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 「지방자치법」 제8조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9조, 제60조

### 4. 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주민소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주민소통담당관
  - 전화번호: 052-241-7262, 팩스번호: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 [붙임]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 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

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최소 6시간 이상)을 말한다.

6.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 배제

## 제2장 주민자치회

제4조(설치 등) ① 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및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당사유가 발행한 날로부터 주민자치회의 위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선정과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당해 동 소재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기타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 추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사

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사무국장 등)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안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 전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건을 홍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자치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구·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

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주민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 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3장 주민자치회 위원

제17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교육·연수 등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3. 제12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수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은 추천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자치학교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기 및 연임기간이 만료된 위원의 경우 제8조에 따른 공개추첨으로 다시 위원으로 선정·위촉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1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에 따라서 명칭을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가 제22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 운영”

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 운영을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경쟁력 유도와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발표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시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 전반과 수입·지출 등 재정운영 실태를 소속 공무원 및 회계책임자 등에게 매월 보고받고 회계감사와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별표 1의 강사수당 지급기준에서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와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료를 정하며,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정한다. 이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

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지출·관리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제28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려는 자가 이용을 포기할 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이 취소·정지된 경우
2.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③ 개강일 이후 수강을 포기할 한 경우에는 포기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100원 미만은 버림)한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동장은 주민이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등이 훼손될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등) ①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주민자치회에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의한 사용료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

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제6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시범 동 주민자치회 위원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시범실시 동의 기존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새로 설치되는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 [별표 1]

강사수당 지급기준(제26조제3항 관련)

구 분	기 준	지 급 액	비 고
정기운영 강좌 강사	시간당	40,000원 이내	※ 외래특강이나 틈새강좌의 경우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별표 2]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제27조제3항 관련)

## 1.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회의실	2시간	10,000원 이하	

## 2. 수강료

구 분	기 준 (과목당 월 수강시간)	수 강 료(월)	비 고
문화, 교양, 취미, 평생교육	20시간 이하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20시간 초과	40,000원 이하	"
생활체육	20시간 이하	15,000원 이하	"
	20시간 초과	20,000원 이하	"

## [별표 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제27조제4항 관련)

## 1. 사용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각종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100분의 100

## 2. 수강료

감 면 대 상	감면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100분의 10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00분의 50
1)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2) 다자녀 카드 소지자(본인)	100분의 20

## ※ 비고

1. 감면대상은 관련 서류 또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감면은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의 수강료에만 적용하고, 실습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1-1317호

##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의거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8일

###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1	구암의원	287-7246	염포로 633, 1층	염포동
2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양정동
3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화봉로 75, 2층	화봉동
4	이내과의원	289-1066	명촌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2층 ※ 엘리베이터 없음	명촌동
5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호계로 272, 1층	호계동
6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호계로 285	
7	탑이비인후과의원	249-7582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5층	송정동
8	울산아동병원	282-7171	호계로 332-1, 3층	신천동
9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170	괴정1길 114, 3, 4, 5층	매곡동
10	열린소아청소년과의원	297-7733	신답로 48, (프리지아) 2층	상안동
11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달천로 9, 2층	천곡동
12	한결의원	268-82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어) 3층	산하동
13	강동의원	298-7534	동해안로 1441, 2층 ※ 엘리베이터 없음	정자동

※ 의료기관 방문 전 백신보유 여부 ☎전화문의 후 방문하세요.

※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 문의: 복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246~7)